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3. 22 선고 2021가합100984(본소), 2022가합100325(반소) 판결
[사해행위취소 · 손해배상(기)]

전 문

원고(반소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든 담당변호사 권영준, 이지안, 김상용

피고(반소원고)B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태환, 김태관

피고C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태환, 김태관

변론 종결 2023. 3. 8.

판결 선고 2023. 3. 22.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117,291,868원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과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2019. 12.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C은 피고(반소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12. 31. 접수 제485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피고 C과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0. 11. 25.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117,291,868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5. 피고 C은 국민건강보험공단(주소: 원주시 건강로 32)에 피고 C과 피고(반소원고) B 사이의 제4항 기재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117,291,868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6.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7.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8.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 본소: 주문 제2, 3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B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500,000,000원을 지급하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2020. 11. 25.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5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C은 국민건강보험공단(주소: 원주시 건강로 32)에 위 채권양도계약이 5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 반소: 원고는 피고 B에게 790,600,931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은 의사로서 D이 운영하던 'E병원'(변경 전 상호 F병원,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포괄양수한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 B를 대리하여 이 사건 병원의 포괄양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B의 컨설팅계약 체결 및 이 사건 컨설팅계약서의 작성

원고는 피고 B와 작성일자를 2018. 8. 1.로 하여, 원고는 피고 B를 대리하여 원고의 비용으로 피고 B이 요양병원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 B은 요양병원 인수 업무가 완료되면 원고에게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병원인수 컨설팅(경영 자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서'라 하고, 위 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한다). 위 컨설팅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병원인수 컨설팅(경영 자문) 계약서

피고 B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요양병원인수(인수 후 피고 B의 요구시 병원에 관련된 관리, 사무보조 기타 등도 협조한다)를 위한 컨설팅, 자문 등을 의뢰하며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기간 및 비용)

1. 기간은 2018년 08월 01.일부터 병원인수시까지 정하며, 기간 만료 후에도 추가로 병원운영경험자문, 사무보조, 기타 등의 계속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 간 재협의하에 발생될 추가비용은 서로 협의한다.

2. 비용은 병원인수시까지(피고 B 명의 사업자등록증 교부시까지의 비용)이며, 기존 경비 사용을 포함 금 일억 원으로 한다(세금제외금액, 세금발생시 피고 B이 제세비용은 추가로 지급한다).

특약: 피고 B이 인수병원 내정 후 제출된 인수가격과 최종 인수가격의 차액분(인수병원 내정된 인수대금표, 최종 인수대금표, 피고 B 명의 사업자등록증은 차후 계약서 내용 뒷면에 첨부한다)에 대하여 50%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가입이행첨부서류, 포괄양도양수계약서 1부, 2018 거래처 미수내역 1부, 캐피탈 거래현황 관리대장 1부, 대출서류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포괄양도양수계약서 1부1) 작성일 2018. 08. 01.

다. 피고 B의 이 사건 병원 포괄양수

1) D은 2016. 9.경 학교법인 G(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H 소재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을 임대기간 2016. 9. 13.부터 2026. 8. 31.까지, 보증금 2억 원(1억 원은 임대차계약의 체결 시, 1억 원은 2017. 8. 31.까지 지급), 차임 월 1,388만 원(부가가치세 별도)2) 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뒤, 위 건물에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2) 원고는 피고 B를 대리하여 2019. 1.경 D과, D이 이 사건 병원 운영에 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병원을 포괄 양수하기 위한 협상을 하였으나, 위 협상은 D이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산되었다. 위 협상 도중 D 측은 원고에게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초안(이하 '이 사건 초안'이라 한다)을 송부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포괄 양도 양수 계약서

갑: D

을: (공란)

1. "갑"이 병원장으로 있는 F병원의 병원 소유 부동산 및 동산 일체를 "을"에게 포괄 양도한다.

4. 현재 병원부채 즉, 병원운영에 필요했던 금융권부채(리스포함), 거래처 미지급금 등을 "을"은 승계를 한다. 단, 금융권의 승계원칙에 의해 승계가 되지 않는 대출금은 "을"이 사업실적이 누적되어 승계가 될 수 있을 때까지 "갑"이 양해를 하며 승계를 유예한다. 그리고 병원 부채에 표기되지 않은 부채는 "을"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직원의 승인 하에 직원들의 퇴직금을 "을"은 "갑"에게서 승계한다.

- 별첨 -

○ 거래처 연락처 및 거래세부 내역서(부채표기)

○ 금융권 부채 전체 리스트

○ 대출(단위, 원) 첨부 4참조

기업은행	1,000,000,000	3,509,337	월지출에 포함됨
I은행	430,000,000	2,195,090	
에너지이용, J	134,712,000	1,194,313	
K은행	200,000,000	898,333	
L	359,640,000	7,419,800	
계	2,124,352,000	15,216,873	

○ 퇴직금추계액(2018. 12. 31. 기준/ 단위: 원)

퇴직금	400,577,790	의료진 퇴직금은 제외(매월 급여에 지급됨)	기준점(개원)
-----	-------------	-------------------------	---------

○ 기타 채무(2018. 12. 31. 기준/단위: 원)

거래처 미수금	352,469,927	보증금 160,000,000원 포함(부식 1억/제약 6천)
---------	-------------	----------------------------------

3) D은 2019. 3.경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병원의 자산, 이 사건 병원 운영에 관한 채무 등을 확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 B에게 재차 위 병원을 포괄 양수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피고 B은 2019. 6. 27. D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부담하였던 채무 중 일부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병원을 D으로부터 포괄 양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 한다), 그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포괄 양도 양수 계약서

갑: D

을: 피고 B

1. "갑"이 병원장으로 있는 F병원의 병원 소유 부동산 및 동산 일체를 "을"에게 포괄 양도한다.
 4. 현재 병원부채 즉, 병원운영에 필요했던 메디칼론(기업은행 8억 한도 보험청구금 담보대출 및 운영자금대출 2억-담보대출) 대출, 거래처 미지급금을3) 확인 후 "을"이 사업실적이 누적되어 승계가 가능시 승계한다.
 5. 직원의 승인 하에 재직 중인 직원들의 퇴직금은 "을"이 승계한다.
 6. "갑"이 기 퇴직한 직원에 대해 미지급한 퇴직금 및 급여의 합산한 금액만큼을 "을"이 분할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단, "갑"이 미지급한 퇴직금 및 급여의 법적 책임 또한 "갑"이 지며, "을"은 법적 책임이 전혀 없다).
- 의료장비, 기기의 잔여금의 지급도 "을"이 사업실적이 누적되어 승계 가능시 승계한다.

7.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부채(상거래 채권, 세금, 과태료, 과징금, 벌금, 손해배상금, 임금 등 모든 금전적 채권 등)는 "을"이 책임지지(승계하지) 않는다.

라. 피고 B의 이 사건 병원 관련 채무관계 정리

- 1) G은 2019. 4. 3. D을 상대로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2억 원 중 2017. 8.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6. 11.부터는 차임지급을 연체하였고, 2017. 10. 이후에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D은 G에 이 사건 병원 건물 등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등 308,607,026원에서 D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 105,000,000원(= 이 사건 건물 보증금 100,000,000원 + 의료진 숙소 명목으로 임대한 건물 보증금 5,000,000원)을 공제한 203,607,0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가합100462)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6. 28. G의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 2) 피고 B은 2019. 6.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인수하기로 하여 2019. 6. 20. G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2019. 8. 2. D의 미납 차임 386,621,151원 중 D이 G에 납부한 보증금 총 10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81,621,151원을 2020. 11.까지 완납하겠다는 취지의 '채무확정 및 변제계획서'를 작성하였다.
- 3) 한편,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D에 대해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M, 2,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은 이 사건 병원에 있는 유체동산에 관한 경매신청을 하였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소속 집행관은 2019. 4. 4.과 2019. 5. 28. 위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집행하였는데, 피고 B은 이 사건 병원 운영에 필수적인 위 유체동산에 관한 경매를 막기 위해 M에게 1억 3,000만 원을, N에 2,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위 각 압류의 집행이 해제되도록 하였다.
- 4) 피고 B은 이 사건 양수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병원 직원들의 2019. 6.분 급여를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컨설팅계약서에 관한 사서증서 인증

원고와 피고 B은 2019. 8. 23. 이 사건 컨설팅계약서에 관하여 공증인 ○ 사무소 등부 2019년

제940호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는데, 위 사서증서에는 이 사건 초안, D 측이 작성한 2018. 12. 31. 기준 2018년 거래처미수내역, 캐피탈 거래현황관리대장, 대출거래현황관리대장, 피고 B의 이 사건 병원 사업자등록증, 이 사건 양수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다.

바.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아파트 증여, 채권양도 등

1) 피고 B은 2019. 12. 31.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9. 12. 30.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B은 2020. 11.경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 중 50억 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2020. 11. 25.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5, 9,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P, Q의 각 증언,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르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비용 1억 원(제3조)에 더하여 '인수병원 내정 후 제출된 인수가격'과 '최종 인수가격' 간 차액의 50% 상당액을 인센티브(특약)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당초 피고 B은 D이 이 사건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2,139,568,873원, 거래처 미지급금 채무 352,469,927원, 퇴직금 채무 400,577,790원을 모두

인수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원고의 컨설팅을 통해 대출금 채무 중 기업은행 채무 1,003,509,337원

및 퇴직금 채무만을 인수하였으므로,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할 인센티브는 744,264,731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총 844,264,731원(= 비용 100,000,000원 + 인센티브 744,264,73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해 그중 5억 원을

청구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채무 등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 C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는 한편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는바, 위 각 법률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 B의 이 사건 아파트 증여행위를 전부 취소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행위를 5억 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 C은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사건 채권양도가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1) 이 사건 컨설팅계약서는 원고가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원고와 피고 B이 통정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무효이다.4) 2) 원고는 부동산중개업법 등에 따라 타인간의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므로, 이 사건 컨설팅계약은 무자격자가 거래행위를 중개하며 그 당사자와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으로서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이고, 그 약정금액 역시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3)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른 컨설팅 용역대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이 이 사건 병원을 포괄 양수하기로 내정한 것은 2019. 1.경이 아니라 2019. 6. 초경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산정해야 한다. 피고 B이 2019. 6. 초경 원고로부터 보고받은 채무인수 내역은 이 사건 양수계약서 제4항(거래처 미지급금 포함), 제5항, 제6항 중 의료장비·기기의 잔여금(퇴직자 퇴직금 제외)이었는데, 피고 B은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D에게 퇴직자 퇴직금 상당 224,118,180원을 지급하는 대신 거래처 미지급금 채무 352,469,927원을 인수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는바, 결국 원고의 조력에 의해 피고 B이 인수하지 않은 채무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인센티브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4) 한편, 원고는 G과 D으로부터 ① D이 G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1억 원, 차임 386,621,151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② 이 사건 병원에 있는 유체동산에 총 1억 5,000만 원 상당의 압류가 되어 있는 사실, ③ D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 채권을 양수한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 직원들의 2019. 6.분 임금 153,979,780원 상당 금원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해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고 B에게 알리지 않았다. 피고 B은 위 각 사실을 모른 채 이 사건 병원을 포괄 양수함으로써 총 790,600,931원의 손해를 입었는바, 원고에 대한 790,600,931원 상당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용역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는 금액은 반소로 구한다.

3. 본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컨설팅 용역대금의 발생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컨설팅계약서 제3조 제2항에 따른 비용 1억 원 및 2019. 1.경 작성된 이 사건 초안에 따라 피고 B이 D으로부터 승계할 것으로 예정된 채무액과 이 사건

양수계약서에 따라 실제 승계한 채무액의 차액 중 50%에 상당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 B은 이 사건 컨설팅계약서가 자신과 원고의 통정에 의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다투고 있을 뿐, 자신이 위 컨설팅계약을 작성한 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또한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함에 있어서 공증인법에서 정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이 주장·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되므로(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 참조), 공증인의 인증을 거친 이 사건 컨설팅계약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처분문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컨설팅계약서는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기재된 부분과 수기로 기재된 부분이 있는데, 위 컨설팅계약서의 작성일로 '2018. 8. 1.'이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컨설팅계약서 '특약'란에는 '인수병원 내정된 인수대금표, 최종 인수대금표, 피고 B 명의 사업자등록증은 차후 계약서 내용 뒷면에 첨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특약'란 바로 아래에 수기로 기재된 첨부서류 부분에는 2018. 8. 1. 이후 작성된 서류들인 이 사건 초안, 2018 거래처 미수내역, 캐피탈 거래현황관리대장, 대출거래현황관리대장, 대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이 사건 양수계약서가 기재되어 있고, 실제 이 사건 컨설팅계약서 뒷면에 위 각 서류들이 첨부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B은 2018. 8. 1.경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컨설팅계약을 작성한 뒤, 위 컨설팅계약서에 관하여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2019. 8. 23.경 첨부서류 부분을 수기로 추가 작성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컨설팅계약서의 '특약'란에는 "피고 B이 인수병원 내정 후 제출된 인수가격과 최종 인수가격의 차액분(인수병원 내정된 인수대금표, 최종 인수대금표, 피고 B 명의 사업자등록증은 차후 계약서 내용 뒷면에 첨부한다)에 대하여 50%를 원고에게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첨부서류로 이 사건 초안, 이 사건 양수계약서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인수병원 내정된 인수대금표'에 상응하는 서류가 이 사건 초안이고, '최종 인수대금표'에 대응하는 서류가 이 사건 양수계약서인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 B은, 원고와 피고 B이 이 사건 병원을 포괄 양수하기로 내정한 시기가 2019. 6.경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일 피고 B이 2019. 6.경 비로소 이 사건 병원을 포괄 양수할 의사를 가지게 되었다면, 그보다 앞선 2019. 1.경 작성된 이 사건 초안 및 2018. 12. 31. 기준 거래처 미수내역 등을 이 사건 컨설팅계약서의 첨부서류에 부기하고, 위 컨설팅계약서에 관하여 사서증서 인증까지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컨설팅 용역대금의 범위

(1) 이 사건 컨설팅계약서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포괄 양수를 위한 초기 비용을 부담하되, 피고 B은 이에 대한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또한 피고 B은 이 사건 컨설팅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앞에서 든 증거들과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은행, J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K은행에 대한 2022. 7. 29.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인센티브는 369,167,474원[= (I은행에 대한 채무 430,000,000원 + J은행에 대한 채무 130,048,369원 + K은행에 대한 채무 178,286,580원) × 50%,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① 이 사건 컨설팅계약의 목적은 병원경영 및 병원포괄양도양수에 관한 전문가인 원고가 피고 B에게 상담 및 조력을 제공하여 요양병원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위 계약의 목적, 위

계약에 따라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 위 계약 중 특약사항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위 특약에 의해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인센티브 금액은 원고의 상담 및 조력에 의해 병원 인수가격이 감액된 부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초안에 따르면, 피고 B은 D으로부터 병원운영에 필요했던 금융기관 채무(리스 포함, 제4항)5) 2,139,568,873원, 거래처 미지급금 채무(제4항) 352,469,927원, 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병원에 재직 중인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채무(제6항, 이하 '재직자 퇴직금 채무'라 한다) 400,577,790원 합계 2,892,616,590원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여야 했다. 그러나 이 사건 양수계약에 따르면, 피고 B은 금융기관 채무 중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제4항), 의료장비 리스 채무(제6항 2문), 재직자 퇴직금 채무(제5항)를 인수하고, D이 이 사건 양수계약 체결 전에 이미 퇴직한 직원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퇴직금 채무(이하 '퇴직자 퇴직금 채무'라 한다) 중 그 당시까지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 상당의 돈을 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제6항 1문). 즉, 이 사건 초안과 이 사건 양수계약서를 비교하면 피고 B은 I은행, J은행, K은행에 대한 채무, 거래처 미지급금 채무를 인수하지 않게 되었고, 퇴직자 퇴직금 채무 상당의 돈을 D에게 지급할 의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다.

③ 이 사건 양수계약서는 D을 대리한 P과 피고 B을 대리한 원고가 2019. 6.경 초안을 작성한 뒤 D과 피고 B이 2019. 6. 27. 확인 후 서명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이 사건 초안에는 피고 B이 재직자 퇴직금 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 B이 D에게 퇴직자 퇴직금 채무 상당의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는데, P과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양수계약서의 초안에는 위 각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④ 피고 B은 일관되게 '원고가 자신과 아무런 상의 없이 D에게 퇴직자 퇴직금 채무 상당의 돈을 지급하는 취지의 초안을 작성해 놓았기에, 2019. 6. 27. 이 사건 양수계약서에 서명할 당시 자신이 위 퇴직자 퇴직금 채무 상당의 약정금 채무를 부담하는 대신 거래처 미지급금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D 측과 합의하였다. 원고는 위 합의 당시에는 참석하지도 않았고, D 측과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는데 어떠한 노력을 한 것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D을 대리하여 이 사건 양수계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 증인 P의 증언에 따르면, 원고는 D과 피고 B이 이 사건

양수계약서에 서명할 때 참석하지 않았고, 당시 P로부터 전화로 '당초 원고와 협의할 당시에는 피고 B이 거래처 미지급금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피고 B이 위 채무의 인수를 거부한다.'는 내용을 듣고는 '이 사건 양수계약을 성사시켜야 하니 D을 설득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B이 퇴직자 퇴직금 채무 상당의 약정금 채무를 부담하는 대신 거래처 미지급금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상담 및 조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 B의 협상 및 결단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할 인센티브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퇴직자 퇴직금 채무 부분과 거래처 미지급금 채무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⑤ 결국 피고 B이 원고의 상담과 조력으로 인해 D으로부터 인수하지 않은 채무는 D의 I은행, J은행, K은행에 대한 각 채무인데, 이 법원의 I은행, J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K은행에 대한 2022. 7. 29.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양수계약 체결일인 2019. 6. 27. 기준으로 D의 I은행에 대한 채무는 430,000,000원, J은행에 대한 채무는 130,048,369원, 6) 7) K은행에 대한 채무는 178,286,580원(= 원금 173,448,419원 + 이자 4,838,16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469,167,474원(= 100,000,000원 + 369,167,474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컨설팅 용역대금의 감액

(1) 위임계약에서 보수액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약정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위임의 경위, 위임업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업무처리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으로 부담하는

469,167,474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이를 그 25%인 117,291,868원(= 469,167,474원 × 25%)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① 증인 P은 "2019. 6.경 D으로부터 '피고 B에게 이 사건 병원을 양도하는 것에 관하여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보고 싶으니, 자신을 대리하여 위 업무를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업무를 처리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2019. 6.경 D과 피고 B 사이에 있었던 이 사건 병원 포괄양도양수에 관한 논의는 D 측의 요청으로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양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B이 위 양수계약의 체결을 서둘러야 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D은 하루라도 빨리 이 사건 병원을 처분하여 위 병원과 관련된 채무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B의 위임을 받은 원고의 업무처리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양수계약서 초안 작성 당시 피고 B이 D에게 퇴직자 퇴직금 채무 상당의 돈을 지급한다는 부분, 거래처 미지급금 채무를 인수한다는 부분을 모두 포함시켰는데, 피고 B은 이 사건 양수계약서에 서명하는 과정에서 거래처 미지급금 채무를 승계한다는 부분을 삭제하였다. 결국 원고는 피고 B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 사건 병원을 포괄 양수하도록 조력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양수계약서의 초안에 피고 B의 의사에 반하는 부분을 포함시켰고, 이는 원고가 아닌 피고 B의 노력으로 삭제된 것이다. 여기에 원고가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라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비용 및 인센티브 금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병원 포괄양수를 위한 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병원은 G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피고 B이 위 병원을 D으로부터 포괄 양수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G과 D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유지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D이 G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중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과 G이 D을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연체차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모르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병원을 포괄 양수한 후 G에 D이 연체한 차임 등을 지급하게 되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양수계약서 작성 전에 이 사건 병원에 있는 의료기기와 집기 등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여부를 미리 파악하여 D에게 그 집행의 해제를 요청하고, 만약 D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양수계약의 조건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 B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집행을 해제하기 위해 M과 N에게 총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병원경영 및 병원 포괄양도양수에 관한 전문가로서 피고 B과 상당한 금액의 보수가 책정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 B이 이 사건 병원을 포괄 양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점들을 충실히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컨설팅계약서 작성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려면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220576 판결 등 참조), 어떤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2) 갑 제9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년경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실(대구지방검찰청 2017형제59267), 원고가 2019. 7.경 의료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대구지방법원 2018고합475)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처분문서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이에 관하여 사서증서 인증을 받기도 한 점, ② 피고 B은 원고가 피고 B에게 1억 원을 대여한 것과 관련하여 재차 '사무장병원' 혐의로 수사를 받을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사무장병원' 혐의 수사를 피하는데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였다는 범죄사실(의료법위반)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였다는 혐의사실에 관하여는

2018. 10. 31.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④ 피고 B은, 원고와 피고 B이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사서증서 인증만을 받은 것이 통정허위표시임을 반증하는 사정이라고 주장하나, 공증을 받을 당시 구체적인 인센티브 액수에 관한 이견으로 인해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사서증서 인증만을 받았을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컨설팅계약 체결이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인중개사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으로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며 매매당사자와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 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 등과 같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중개수수료의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감액된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6525 판결 참조).

(2) 피고 B은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용역업무가 부동산중개업에 해당하므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은 요양병원의 시설, 의료기기, 거래선 등을 포괄 양수하여 병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의료재단의 이사로 활동하며 병원행정에 관해 잘 알고 있는 원고와 이 사건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로 이 사건 양수계약은 이 사건 병원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승계뿐 아니라 이 사건 병원의 인적·물적 영업조직을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점, ③ 설령 원고의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부동산매매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컨설팅계약 외에 부동산매매 중개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그러한 중개행위를 반복 계속할 의사로 위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컨설팅 용역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컨설팅계약 체결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아래 '4. 반소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컨설팅 용역대금 117,291,86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8)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117,291,868원 상당의 용역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채권은 피고 B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거나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기 전인 2019. 6. 27. 발생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여부 가) 이 사건 아파트 증여행위에 관한 판단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K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 이 법원의 마산회원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 B은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아파트가 자신이 소유했던 유일한 부동산임을 자인하고 있는 점, ②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할 당시 원고에 대하여 117,291,868원 상당의 용역대금채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K은행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7,624,000원, 이 사건 양수계약에 따라 D으로부터 인수한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한 2019. 12. 30.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무상으로 피고 C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위 아파트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9) 나) 이 사건 채권 양도행위에 관한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2020.

11. 25. 당시에 위 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에 어떠한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 C에게 무상으로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가)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피고 B에 대한 용역대금채권 액수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담보가액을 상회하므로, 위 증여계약은 전부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 C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9. 12. 31. 자기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가 피보전채권으로 피고 B에 대하여 117,291,868원 상당의 용역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B이 피고 C에게 양도한 이 사건 채권 액수는 위 피보전채권 액수를 상회하므로, 사해행위인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위 피보전채권 액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117,291,868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반소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D의 미납 차임 관련 불법행위 성립여부 앞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증인 P은 '원고가 G 측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2억 원이 아니라 1억 원이라는 사실을 수차례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는 P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P은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원고에게 D의 개인회생신청서 등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는 일관되게 자신은 위와 같은 서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P이 위 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은 점, ③ 피고 B은 원고의 기망으로 인하여 2019. 6. 20. D의 G에 대한 미납 차임채무까지 부담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와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해당 계약서는 원고가 아니라 G 관계자로부터 메일로 또는 직접 수령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결국 자신이 위 계약서를 검토한 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G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관련 업무를 처리한 증인 Q은 '원고가 한 번 G을 찾아온 것은 기억이 나는데, 그것이 G과 피고 B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전인지 후인지는 기억나지 않고, 그 당시 원고에게 D이 미납된 보증금 및 차임에 관하여 이야기를 했는지도 현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원고가 D의 보증금 및 차임 연체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피고 B에게 알리지 않아 위 양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M, N의 유체동산압류 관련 불법행위 성립여부 앞에서 든 증거들,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증인 P은 '원고도 이 사건 양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병원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 집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원고는 일관되게 위 압류 집행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P은 D을 대리하여 이 사건 병원의 포괄 양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였던 사람으로서 만일 이 사건 양수계약 체결 전에 위 압류 집행 사실을 피고 B 측에 알리지 않은 것이 드러날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당할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증인 P의 증언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병원의 행정사무국장으로서 이 사건 양수계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 R은 '이 사건 양수계약이 체결된 직후인 2019. 7.경 이 사건 병원의 벽에 압류표시가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이를 촬영하여 피고 B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보고하였다. 이 사건 양수계약 체결을 위해 원고 및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병원을 오갈 당시에는 압류표시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D과 P으로부터 위 압류 집행 사실을 듣지 못하여 매우 당황하였으나, 피고 B이 그대로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겠다고 하여 인수절차를 마무리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③ P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병원에 붙어 있던 압류표시를 가린 사실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R은 이 사건 양수계약 체결 이후인 2019. 7. 4.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압류표시가 가려져 있는 장면을 촬영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양수계약 체결 전에 M과 N의 경매신청에 의해 이 사건 병원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 집행이 마쳐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피고 B에게 고지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2019. 6.분 병원 직원 급여 관련 불법행위 성립여부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양수계약 체결 전에 D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 채권을 양수한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 직원들의 2019. 6.분 임금 상당의 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거나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은행으로부터 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양수계약 체결 전에 D이 G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및 차임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병원의 유체동산에 압류가 집행되어 있었던 사실, D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 채권을 양수한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 직원들의 2019. 6.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실을 각 알았음에도 피고 B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이 사건 컨설팅계약의 목적은 병원경영 및 병원포괄양도양수에 관한 전문가인 원고가 피고 B에게 상담 및 조력을 제공하여 요양병원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비록 피고 B이 최적의 조건으로 이 사건 병원을 포괄양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결국 피고 B은 이 사건 병원을 포괄 양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양수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관련 사항을 확인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병원에 있는 유체동산에 압류 집행이 마쳐진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컨설팅 용역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이를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컨설팅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점에 있어서도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 B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강지웅

판사박연주

판사홍진국

별지

1) 이 부분은 워드프로세서에 의하지 않고 수기로 작성되었으며, 원고와 피고 B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2)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차임이 월 1,318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었으나, 2018. 10.경 월 1,388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3) 해당 부분을 삭제한다는 의미로 '거래처 미수금' 부분에 삭선이 그어져 있고, 그 주변에 D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4) 피고들은, 설령 통정에 의한 허위의 의사표시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는 D이 G에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의료기기 및 집기에 경매신청이 들어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이 사실상 어렵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모르는 피고 B에게 위 병원을 포괄 양수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컨설팅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2021. 12. 20.자 준비서면 참조). 그러나 피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위 각 사정은 이 사건 양수계약의 취소사유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이 사건 컨설팅계약의 취소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기업은행, I은행, J은행, K은행, L에 대한 각 채무를 말한다.

6) ○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원금 33,000,000원 + 정상이자 151,890원[= 33,000,000원 × {112일(2019. 3. 8.부터 2019. 6. 27.까지) ÷ 365일} × 정상이자율 1.5%] + 원금연체이자 208,849원[= 33,000,000원 × {77일(2019. 4. 12.부터 2019. 6. 27.까지) ÷ 365일} × 연체이자율 3%] = 33,360,739원

○ 계좌번호(계좌번호 2 생략): 원금 78,000,000원 + 정상이자 576,986원[= 78,000,000원 × {180일(2018. 12. 30.부터 2019. 6. 27.까지) ÷ 365일} × 정상이자율 1.5%] + 원금연체이자

493,643원[= 78,000,000원 × {77일(2019. 4. 12부터 2019. 6. 27까지) ÷ 365일} × 연체이자율 3%] + 이자연체이자 177원 = 79,070,806원

○ 계좌번호(계좌번호 3 생략): 원금 17,223,892원 + 정상이자 280,875원 + 원금연체이자 109,006원[= 17,223,892원 × {77일(2019. 4. 12부터 2019. 6. 27까지) ÷ 365일} × 연체이자율 3%]

+ 이자연체이자 3,051원 = 17,616,824원

7) 계좌번호(계좌번호 3 생략)의 정상이자 계산근거: 75,210원(2019. 2. 27.부터 2019. 3. 26.까지의 정상이자) + 71,604원(2019. 3. 27.부터 2019. 4. 26.까지의 정상이자) + 67,851원(2019. 4. 27.부터 2019. 5. 26.까지의 정상이자) + 64,219원(2019. 5. 27.부터 2019. 6. 26.까지의 정상이자) + 1,991원(2019. 6. 27.의 정상이자, 대상금액 13,898,018원 × 1일 ÷ 365일 × 이자율 5.23%) = 280,875원

8) 원고는 위 용역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지 않고 있다.

9)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면적의 아파트는 2019. 12.경 7,000만 원 내지 8,100만 원 상당에 거래되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57,624,000원이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 중 위 피담보채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등 참조).